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1. 12. 1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87호로 2011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 중 일부 조항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우리 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구청장 여비 지급 시 ‘공무원 여비 규정’상의 적용 항목 변경(안 제3조)
- 나.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중 지방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는 규정에 대한 명시(안 제4조)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순화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중 국외 숙박비 등 일부 조항이 2011. 2. 9일 일부개정되어 2011. 7.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구 공무원의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1항에 구청장의 여비 지급 구분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하도록 함,
 - 안 제4조에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규정 등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함.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 이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절한 개정으로 보여 지며,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행정안전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시·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한다.

②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③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3.3>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2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대학교 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호봉인 헌법연구원,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3호봉 대학교원 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2호봉 이하의 헌법연구원, 헌법연구원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원,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 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라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p>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하급 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라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은 제외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위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 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p>
	<p>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p>